

『2023년 제3차 사업장 환경 개선』 지원사업 공모

자연재해(폭우 등)로 피해를 본 지역자활센터의 작업환경 회복을 위한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오니 피해기관의 신청 바랍니다.

2023.9.6.(수)

(재)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

I

사업개요

□ 사업명

- 2023년 제3차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

□ 신청대상

- ‘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’ 내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(29곳/표 참고)
 - 단,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않았으나 인근 지역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,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해당 시·도* 내 지역자활센터도 신청 가능
- * 대구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

[참고]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

대상재난	시군 단위(8곳)	읍.면 단위(21곳)
6.27~7.27. 호우 (7개 시.군, 20개 읍.면)	.충북 충주시, 제천시, 단양군 .충남 보령시 .전북 김제시, 완주군 .전남 신안군	.충북 보은군 회인면 / 증평군 증평읍.도안면 음성군 음성읍.소이면.원남면 .충남 예산군 신암면.오가면 .전북 군산시 서수면 / 고창군 공음면.대산면 부안군 보안면.진서면.백산면 .전남 영암군 금정면.시종면 .경북 안동시 길안면.예안면.녹전면 상주시 동문동
제6호 태풍 카눈 (1개 군, 1개 면)	.대구 군위군	.강원 고성군 현내면

* 2023.8.14.(월)_행정안전부 보도자료[태풍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]

□ 지원내용

-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장 수해복구를 위한 시설 개보수·장비 구축(구매·수리) 등 센터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지원
 - * '1개 센터 당 5천만원 이내'이므로 1개 이상 사업단 신청 가능
 - ** 긴급지원 성격이므로 기존 사업장 환경개선지원사업과 달리 자부담 매칭 불필요

II

신청 및 접수

□ 신청기간

- 2023년 9월 6일(수) ~ 9월 18일(월) 18:00까지

□ 신청방법

- 공고문에 명시된 '제출서류' 일괄 제출
 - 접수처: sw2448@kdissw.or.kr
 - 사업 문의 : 성장지원부 주임 이상우, T. 02-3415-6984

□ 제출서류

구분	서류명	비고
-	신청 공문	-
서식1	사업신청서	피해 현황 및 지원내용 구체적으로 작성
서식2	증빙 사진	-
서식3	예산서	-
-	사업자등록증	-
-	지자체 공문	-
-	견적서	-
-	기타 증빙	서식 외 제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
서식4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	-
서식5	청렴이행각서	-

※ 예산서 관련: 지출 근거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산출근거(금액, 수량 등) 명확히 기재

※ 개인 고유식별번호(주민등록번호 등)는 모두 마스킹 처리 후 제출 및 보관

※ 지자체 공문 제출 관련

- 별도 양식은 없으며, 피해 사실 및 수해복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

※ 견적서 관련: 예산서 작성 시 예산 수립의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견적서(1부) 제출
단, 선정 이후 정산 시 실견적 제출 필요

※ 증빙 사진 외 재난피해 사실 입증에 위한 서류 있을 시 제출

□ 신청 시 유의 사항

○ 제출양식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및 서류제출 필수

○ 장비구매 신청의 경우 불용 처리된 장비는 재난 이전 사용기록을 증빙해야함
(자산취득대장, 장비구입 품의 등 확인 가능한 증빙 제출 필수)

○ 차량 구매는 가능하나, 사업 기간 내 확보 가능한 건에 한함

* 차량 계약 시 지역자활센터 명의로 함

○ 농작물 등 1차 생산품 및 소모성 물품 등은 지원하지 않으며, 공고문에 불가항
목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항목은 제외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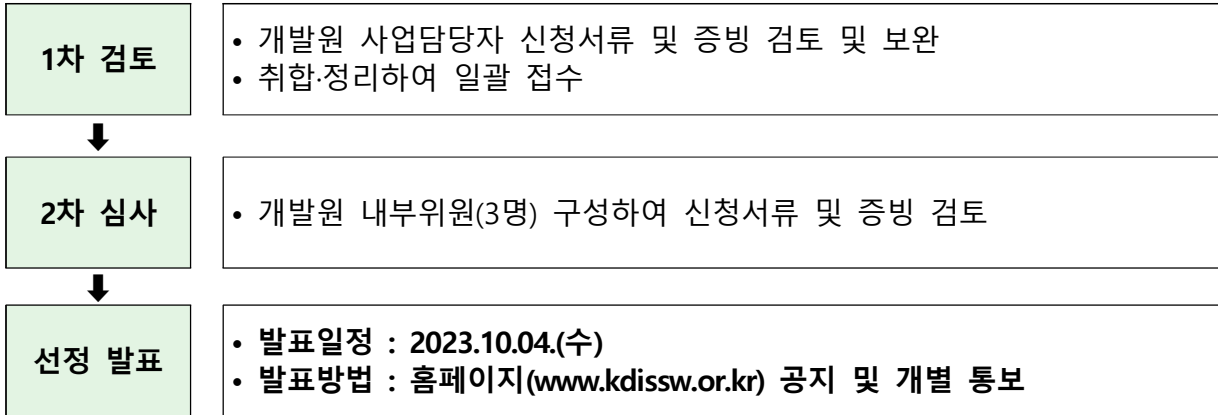
○ (이행보증보험) 지원금에 한하며, 비용은 사업기관 자부담

III

선정방법 및 일정

□ 선정방법

○ 제출서류 기반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 확정함



※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전에 공지

□ 추진일정

일정	시작일	종료일	추진 주체	비고
공모·접수	2023.09.06	2023.09.18	(신청) 센터 → 개발원	이메일 신청
↓				
검토 및 심사	2023.09.19	2023.09.27	개발원	-
↓				
결과 발표	2023.10.04		개발원	공문 발송
↓				
협약 체결	2023.10.04	2023.10.06	개발원 – 센터	-
=				
지원금 교부	협약체결 이후 즉시		-	-
↓				
사업종료	2023.11.15.		-	사업비 집행 기간 종료
↓				
최종보고	2023.12.		(제출) 센터 → 개발원	이메일 제출
↓				
잔액 및 이자 반납	2023.12.		(반납) 센터 → 개발원	
=				
모니터링	~2024.12		(시행) 개발원	-

IV

기타 유의사항

-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, 부정수급·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함
- 필요시 지원대상은 개발원과 협의를 통하여 신청금액 조정 내용을 반영해야 함
- 신청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신청서 외 별도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
-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-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이때 제반비용은 신청기관 부담으로 함

VI

서식

구분	서류명	비고
서식1	사업신청서	-
서식2	증빙 사진	-
서식3	예산서	-
서식4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	-
서식5	청렴이행각서	-

※ 예산서 관련: 지출 근거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산출근거(금액, 수량 등) 명확히 기재

※ 개인 고유식별번호(주민등록번호 등)는 모두 마스킹 처리 후 제출 및 보관